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31.] [행정안전부령 제498호, 2024. 7. 3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044-205-5118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우수유출저감대책) 044-205-5166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044-205-5168~9, 5171~2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재해복구) 044-205-53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3.]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내용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0. 6.>

[본조신설 2020. 6. 16.]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0. 6. 16.>]

제1조의3(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0. 31., 2020. 6. 16.>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통보한 이후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변경 통보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16.>

④ 관리책임자는 지정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4. 7. 30.>

[본조신설 2017. 3. 9.]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20. 6. 16.>]

제1조의4(이행상황 관리대장)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이하 “이행상황”이라 한다)의 관리대장을 개발사업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 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고 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1.>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3. 9.]

[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20. 6. 16.>]

제1조의5(사업 착공 등의 통보)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공사 중지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3. 9.]

[제1조의4에서 이동 <2020. 6. 16.>]

제1조의6(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2. 이행상황
3. 승계의 사유 및 일시

[본조신설 2021. 10. 21.]

제1조의7(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제1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을 검토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30.]

[종전 제1조의7은 제1조의8로 이동 <2024. 7. 30.>]

제1조의8(협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4. 6. 26.>

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 가. 안전울타리,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 나. 해당 사업에 따른 주민 등의 이주에 따라 사업지구 내 화재 발생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고, 주변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공사
 - 다. 해당 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2. 국가유산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3. 해당 사업의 성토(흙쌓기)를 위하여 사업부지 내에 토사적치장(土砂積置場)을 설치하는 공사

②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가 요청된 것을 확인한 후 해당 공사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21.]

[제1조의7에서 이동 <2024. 7. 30.>]

제2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3. 9., 2017. 7. 26.>

1. 지방자치단체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
- ② 협의회의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몇 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3.]

제3조(협의회의 기능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연재해 사전 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2. 시설물별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연구
4.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별로 재해 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회원이 재해 경감을 위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방재정책에 반영하거나 추가적인 연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구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한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3.]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4. 23., 2017. 3. 9.>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명령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 3. 9.>

[전문개정 2012. 8. 23.]

[제목개정 2013. 4. 23.]

제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의 효과 및 지역발전 기여도
2. 예산 투자의 효율성
3.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4.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해당 지역 주민의 만족도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평가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수행성과: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량적 성과
2. 사업효과: 재해 저감성, 경제적 효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주민 호응도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내용, 범위 등
2. 현황 조사: 정비사업 지구의 일반 특성, 과거 재해기록, 행정자료, 관련 계획 등
3. 재해발생 원인: 피해현황, 수리·수문현황, 재해 취약요인, 피해원인 등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7. 11.]

[중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8. 7. 11.>]

제4조의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1., 2020. 6. 16.>

1. 공청회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또는 변경의 주요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공청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8. 23.]

[제목개정 2018. 10. 31.]

[제4조의2에서 이동, 중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18. 7. 11.>]

제4조의4(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는 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검토회의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할 전문가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0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31.>

1.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2. 자연재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가 임명·위촉, 검토회의의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3.]

[제목개정 2018. 10. 31.]

[제4조의3에서 이동, 중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18. 7. 11.>]

제4조의5(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등) ①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세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3. 9., 2018. 10. 31.>

1. 세부기준의 제정 목적 및 적용 기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 및 작성 원칙에 관한 사항
3. 기초조사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연재해저감대책 수립 내용 및 방법·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 10. 31.>

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23.]

[제목개정 2018. 10. 31.]

[제4조의4에서 이동, 중전 제4조의5는 제4조의6으로 이동 <2018. 7. 11.>]

제4조의6(침수방지시설의 유지·관리)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막이판
2. 역류방지 밸브
3. 배수펌프 및 집수정

② 영 제15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2. 수밀성(물의 침투, 흡수 및 투과를 막는 성질)이 확보될 것
3. 그 밖에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6. 26.]

[종전 제4조의6은 제4조의7로 이동 <2024. 6. 26.>]

제4조의7(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 상황의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 피해 상황 및 대응
 - 가. 재해명, 재해 일시, 피해지역 및 시설
 - 나. 피해 발생 당시의 기상 상황, 하천 및 댐 수위(水位) 등 주변 상황을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 다.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내용, 이재민 발생 및 대처 상황
 - 라. 동원 인력·장비·자재 등 응급조치 내용
 - 마.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
 - 바. 자원봉사자 등의 활동 사항
 - 사. 재해 발생 시 대비·대응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처리일지
 - 아. 재해 원인 분석 결과

2. 복구 상황
 - 가. 재해복구공사의 종류별 복구 물량 및 복구 금액의 산출 명세
 - 나. 복구공사의 명칭·위치, 공사 발주 및 복구 추진 현황

3. 그 밖의 사항
 - 가. 피해 상황 대응 및 복구 관련 미담·모범 사례
 - 나. 그 밖에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재해 상황의 기록을 영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난대응 시스템(이하 “재난대응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하며, 항공사진측량의 방법과 시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3.]

[제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7은 제4조의8로 이동 <2024. 6. 26.>]

제4조의8(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침수흔적 확인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침수흔적확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6서식의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9.>

[본조신설 2013. 2. 5.]

[제4조의7에서 이동 <2024. 6. 26.>]

제5조(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점검·정비 등의 조치(이하 “재해예방조치”라 한다)를 요청하거나 명할 때에는 재해예방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재해예방조치 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7서식의 재해예방조치 요청서(명령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5., 2014. 8. 4., 2017. 3. 9.>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재해예방조치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의8서식의 재해예방조치 결과통보서에 재해예방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5., 2014. 8. 4., 2017. 3. 9.>

[전문개정 2012. 8. 23.]

제5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영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8. 23.]

제5조의3(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 영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현황 파악·관리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8. 23.]

제5조의4(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 10. 21.>

[전문개정 2012. 8. 23.]

제6조(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카드) 영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카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 10. 21.>

[전문개정 2012. 8. 23.]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7조(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계별로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이하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예방단계: 풍수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위험 분야에 대한 예방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단계
2. 대응단계: 위험지역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키고, 인력·물자·장비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단계
3. 복구단계: 개선·복구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등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풍수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 예상시설의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9.>

[전문개정 2012. 8. 23.]

제8조(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인명 피해
2. 방역 및 의료

3. 재해쓰레기 처리
 4. 자원봉사
 5. 도로
 6. 산사태
 7. 상수도
 8. 이재민 구호
 9. 하천시설
 10. 소규모 시설[「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소하천(小河川), 농로(農路), 소교량(小橋梁), 그 밖에 마을공동회관 등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
 11. 수리시설
 12. 도시 방재시설(도시 배수펌프장을 포함한다)
 13. 그 밖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대응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서비스 분야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대응시스템을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23.]

제9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6조제2항 및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8. 4.,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3., 2023. 10. 6.>

1.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인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 나. 기술인력의 재직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3., 2024. 6. 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이하 “대행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 8. 4., 2014. 11. 19., 2017. 7. 26., 2020. 6. 16., 2020. 12. 23.>

1. 대행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상호 및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대행자 인적사항
2. 사무소 소재지
3. 대행업무 분야
4. 대행자 등록번호 및 등록일

[전문개정 2012. 8. 23.]

[제목개정 2014. 8. 4.]

제10조(대행자 변경 등록 등) 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대행자는 영 제32조의3에 따른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 등록 신

청서에 대행자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8. 4.,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3., 2023. 10. 6.>

1.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술인력의 자격·학력·경력 및 재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서를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3., 2024. 6. 26.>
 1. 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사업자등록증명
 2.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대행자등록증에 적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3.>
 [전문개정 2012. 8. 23.]

제10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내용의 보존)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사업명, 사업기간 등을 포함하는 대행 업무의 개요
 2. 대행 업무에 투입된 기술인력 현황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17. 3. 9.]

제10조의3(대행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분할·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6. 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대행자등록증에 적고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 [본조신설 2021. 10. 21.]

제1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① 대행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 휴업·폐업·재개 신고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8. 4.,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3.>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3.>

[전문개정 2012. 8. 23.]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8. 23.]

제13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해당 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3.]

제14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①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단계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23., 2014. 11. 19., 2017. 7. 26.>

1. 예방단계

-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재난취약시설 등의 점검·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나. 방재물자·동원장비의 확보·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대비단계

- 가.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비상근무계획에 관한 사항
- 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대한 상황 전파 및 방송 요청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대응단계

- 가.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나. 통신·전력·가스·수도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 다.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복구단계

- 가. 방역 등 보건위생 및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 나. 이재민 수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다. 복구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 군부대의 인력·장비의 동원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3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대규모 건설공사장 및 농림·축산 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응급진료·구호 및 이재민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 상황 및 국민 행동 요령 홍보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3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담당자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비상근무 실무반별 재난의 대비·대응·복구 등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영 제3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민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도시지역 주민의 실내·실외 전기수리 금지 및 낙하위험 시설물 제거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지역 주민의 농작물 보호조치 및 선박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3. 산간지역 주민의 산사태 위험지구 접근 금지 및 산간계곡으로부터의 대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영 제3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과(室課)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실과별 소관 시설물의 사전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실과별 재해복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 8. 23.]

제4장 재해복구

제15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민방위교육관 등 전문교육기관에 재해조사 담당공무원 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교육 대상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다.

③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3.]

제16조(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 영 제37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에 따라 실시되는 복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3.]

제17조 삭제 <2018. 1. 18.>

제17조의2 삭제 <2024. 2. 16.>

제17조의3 삭제 <2024. 2. 16.>

제18조 삭제 <2012. 8. 23.>

제19조(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사전심의하는 재해복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한다. <개정 2014. 8. 4., 2024. 2. 16.>

1. 중앙대책본부장: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 시·도대책본부장: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
- ②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4., 2017. 3. 9.>

1. 사업계획서
 2. 사업위치도
 3. 현황 사진
 4. 설계도서
 5. 우기(雨期)에 대비한 조치계획서
 6.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중앙대책본부장 및 시·도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8. 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 절차 등 사전심의를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전문개정 2012. 8. 23.]

제19조의2(재해복구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9조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은 재해복구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대책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8. 4., 2014. 11. 19., 2017. 7. 26.>

1.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2.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재해복구사업의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
 5.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
 6. 재해복구사업의 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경우로서 각 변경 규모의 합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에 주요 시설의 변경 등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12. 8. 23.]

제19조의3(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사전심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 4., 2024. 2. 16.>

1. 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과 피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여부
 2. 시설별 주변 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3.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12. 8. 23.]

제20조(재해복구사업의 점검 결과 보고) ① 시·도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8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4., 2018. 1. 18., 2024. 2. 16.>

1. 피해 현황 및 재해복구사업 개요
2. 사유시설(私有施設)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
3. 공공시설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
4.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 결과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의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대책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8. 4.,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3.]

제21조(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및 제출 절차 등) ①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8.>

1. 재해복구사업의 해당 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2. 침수유역과 관련된 재해복구사업의 침수 저감 능력 및 경제성
3. 재해복구사업 계획·추진 및 사후관리 체제의 적정성
4. 재해복구사업에 따른 지역의 발전성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결과의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3.]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신설 2012. 8. 23.>

제21조의2(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영 제4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협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12. 19.>

1.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2. 법 제72조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기업 재해경감협회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 분야의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회 또는 학회
 - 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연구 전담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전문개정 2012. 8. 23.]

제22조 삭제 <2023. 1. 3.>

제23조 삭제 <2023. 1. 3.>

제24조 삭제 <2023. 1. 3.>

제25조 삭제 <2023. 1. 3.>

제26조 삭제 <2023. 1. 3.>

제6장 보칙 <개정 2012. 8. 23.>

제26조의2(수수료) ① 법 제6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수탁기관의 장이 실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3.]

제27조(사이버교육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위하여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3. 9., 2017. 7.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의 운영을 방재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3.]

제27조의2(특수전문교육과정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위탁 관련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3. 9., 2017. 7. 26.>

1.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영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발급을 위한 세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교육 운영 상황의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5. 교육생 선발,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
 6. 위탁교육기관 지도·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영 제58조제3항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8. 23.]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7.>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례보상
 4. 유족보상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31.]

제27조의4(전국연합회의 업무) 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2. 8. 23.]

제27조의5(전국연합회의 구성) ① 전국연합회의 회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해당 시·도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으로 구성된 연합회(이하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라 한다)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된다. 이 경우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부회장인 회원은 시·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8. 23.]

제27조의6(전국연합회의 임원) ① 전국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총장 1명
-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2. 8. 23.]

제27조의7(임원의 임기) ① 전국연합회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전국연합회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 8. 23.]

제27조의8(임원의 직무) ① 전국연합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전국연합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전국연합회의 감사는 전국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 ④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2. 8. 23.]

제27조의9(총회) ①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31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전국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전국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2. 8. 23.]

제27조의10(의결) 전국연합회의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2. 8. 23.]

제27조의11(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연합회의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8. 23.]

제28조(재결의 신청) 영 제66조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8. 23.]

제29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8. 23.]

제30조(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영 제71조제2항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8. 23.]

제31조(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등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에 대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구분하여 진단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16., 2024. 6. 26.>

[본조신설 2012. 8. 23.]

[제목개정 2024. 6. 26.]

제32조 삭제 <2018. 7. 11.>

부칙 <제498호, 2024.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책임자의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관리책임자로 지정되거나 변경된 사람은 제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